

# 『2025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5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 모집규모/분야 : 80개사(데뷔기업 20개사, 유망·리딩기업 60개사)
- 사업기간 : 2025.3.1.(토)~11.30.(일)
- 모집기간 : 2024.12.16.(월)~ 2025.1.10.(금) 18:00 까지
- 주관기관 : KOTRA
- 지원사항 : 국내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 지원

## 2. 지원대상

-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 ①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 ②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솔루션
  - ③ (ICT)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 ④ (기타서비스) 라이선스 기반의 서비스 수출기업

\*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스포츠기술, 헬스케어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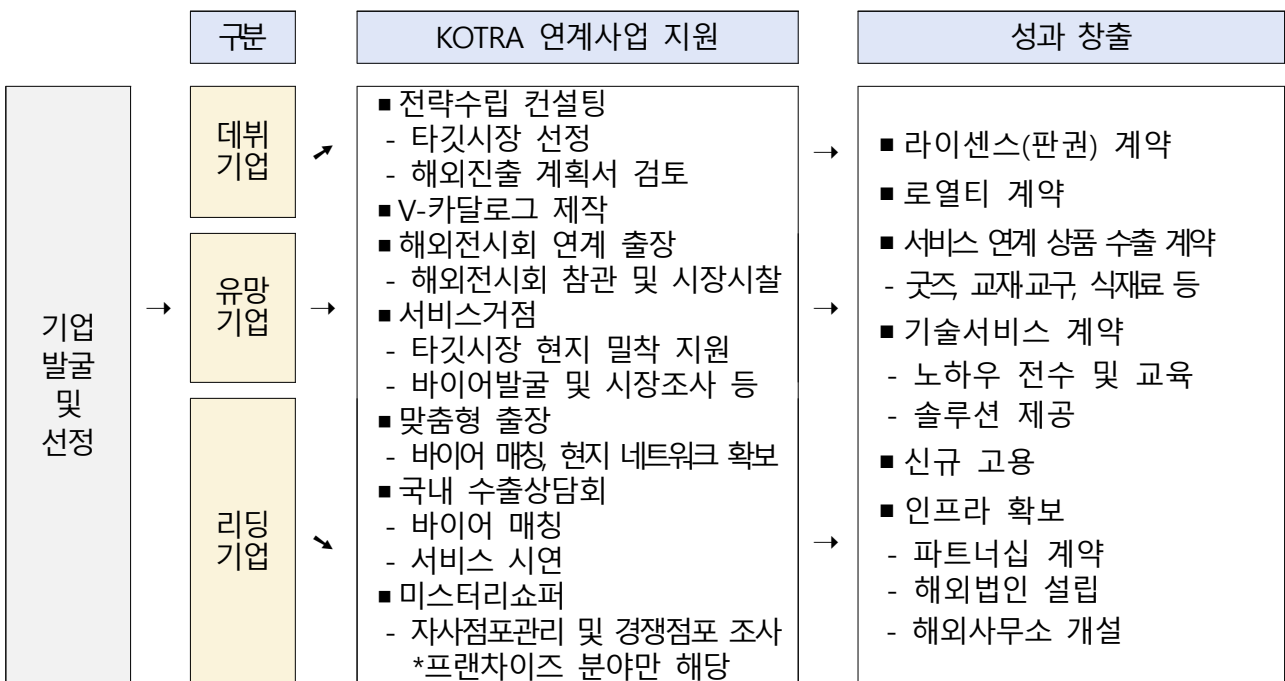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개인기업
- 동 지원사업 3년차(회) 참가기업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

### 3. 지원 단계 구성 및 지원 내용

○ 지원 단계 구성 : 해외진출 역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데뷔기업) 해외사업 초보기업으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한 초보기업  
\*진출전략컨설팅, 현지시장조사 등
- (유망기업) 해외사업계획서가 면밀히 갖춰져 있으며 타깃시장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강소기업  
\*서비스현지화(지재권등록, 인증, 번역 등, 홈페이지구축), 파트너발굴 등
- (리딩기업) 서비스 및 제품수출 경력 5년 이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통해 즉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선도기업  
\*해외마케팅지원

○ 기업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 지원사업비

구분(기업수)	기업별 지원금 (기업분담금 포함)
데뷔 기업(20)	35백만원
유망·리딩 기업(60)	45백만원
*우수기업(10)	15백만원

○ 기업분담금

구분(기업수)	기업별 분담금
데뷔기업(20)	10.5백만원
유망·리딩 기업(60)	13.5백만원

\*(우수기업) 유망, 리딩기업(60개사)을 대상으로 상반기 수출성과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 참가기업 필수과업

참가대상	구분	내용	참가비
데뷔기업 (3)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확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li> <li>* 기업역량(글로벌 역량진단 테스트 - GCL Test)</li> <li>* 사업성 검토(해외진출 사업성 및 타깃국가 시장성)</li> <li>* 전략수립(현지화 및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등)</li> </ul>	250만원
	V-카달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비디오 카달로그 제작을 지원</li> </ul>	300만원
	해외전시회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별 해외유망전시회 참관 및 시장시찰</li> <li>* 해외전시회 참관, 관련기관 방문, 네트워킹 오찬 등</li> </ul>	200만원
유망기업 (3-4)	서비스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깃지역 서비스거점 전담직원을 활용, 참가기업 수요 맞춤형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li> <li>* 현지 정보조사, 판로개척, 바이어발굴, 바이어발굴 등</li> <li>* '25.4월~26년 3월까지 이용 가능</li> <li>* (지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도쿄, 오사카, LA, 하노이, 호치민, 두바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뭄바이, 자카르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싱가포르, 마닐라, 멕시코시티 (일부 변경 예정)</li> </ul>	250만원 ~ 300만원
	맞춤형 비즈니스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비즈니스 출장 지원</li> <li>* 개별기업 희망지역 출장 지원</li> <li>* 바이어상담, 산업별 관련기관 방문, 네트워킹 오찬 등</li> </ul>	200만원
	미스터리 쇼퍼 (프랜차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해외점포점검 및 경쟁사점포조사를 통해 현지 점포관리 및 타깃시장 전략수립계획 활용</li> <li>*기본점검수량(2개점포)</li> <li>*프랜차이즈 분야만 해당</li> </ul>	200만원
	리딩기업 (1)	붙업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쇼케이스관 또는 바이어 라운지 부스 참가</li> <li>*부스면적(약 9㎡) 및 장치 제공</li> </ul>

\*필수과업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신청방법 : ❶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  
❷ 제출서류 네이버폼 접수(<https://naver.me/F6lW3KKT>)

○ 신청기간 : 2024.12.16.(월)~ 2025.1.10.(금) 18:00 까지

○ 지원절차

공고	접수마감	선정평가	결과발표	사업출범
홈페이지공고	접수마감	평가완료	선정기업 발표	협약체결
'24.12.16.(월)	'25.1.10.(금)	27.(금)이내	2.12.(수)	2.21.(금)

\* 세부일정은 지원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1 / 7613)

○ 제출서류

구분	내용
①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투자24 홈페이지 신청</li> <li>■ 네이버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②-⑥ 필수)</li> </ul>
②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 계획 (자체양식)</li> </ul>
③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ul>
④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사본 1부</li> </ul>
⑤ 완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1부</li> </ul>
⑥ 고용현황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4.11월 기준)</li> </ul>
기타(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입 확인증(무역협회발급)</li> </ul>

< 유의 사항 >

- 선정 기업 발표 및 협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기업분담금 미납시 선정 취소
- **지원사업 기간내 기업분담금 미소진의 경우 환급 불가**
- 지원사업 신청시점, 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간제 사업 또는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기재해야 하며 누락 발견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②사업계획서내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 기재)

5. 선정심사

○ 심사 내용

구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서류심사 (40)	사업내용	사업계획서내 해외진출 BM에 대한 상세 설명	10
	적합도	국내기업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단계별 신청 적합도 * 데뷔, 유망, 리딩기업별 사업계획 적합도 판단	15
	성과목표	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 제출	10
	노력도	제출서류 양식 준수	5
	가산점(3점)	'24년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입 확인증(무역협회)	3
대면심사 (60)	혁신성	현실경제 접목 가능한 유망 서비스인가?	15
	참가목적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목적이 부합하는가?	15
	사용계획	해외 마케팅비 사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15
	기대효과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15

\* '24년도 참가기업은 해당연도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 가감점 반영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PT심사 기회 제공

\* 최종 선정기업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업 선정

I. 기업현황 (작성 노력도 비중 5%)

1. 기업 일반 소개
2. 영업 현황 (국내/해외 포함, 해외진출 현황 포함)
3. 사업 책임자 이력사항
4. 해외사업 전담인력 현황(대표자 포함)

II. 서비스 소개 (30%)

1. 해외진출 서비스 소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2. 타깃 국가(도시), 선정 사유
3. 해외진출 방식
4. 수익 구조
5. 해외진출 서비스에 컨설팅이 필요한 요소 진단

III.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계획 (35%)

1. 목표시장 진출 계획(최대3국, 선정사유 포함)
2. 타깃대상과 영업전략
3. 진출에 따른 사업성과(3개년) 및 고용창출 효과(3개년)
  - \* 구체적인 숫자와 추산근거 제시(지원사업 종료 후 1년 후 고용 효과 포함)
4. **(중요)핵심성과지표 제출(성약건수, 금액 등 상세 목표 제출)**
  - \* 기업단계 KPI 작성 기준 참고

IV. 활용 계획 (30%)

1. 전략수립 컨설팅 활용 계획(데뷔기업)
2. 서비스 해외거점(KOTRA 해외무역관) 활용 계획(데뷔기업, 유망기업)
3. 사업경비 사용계획(데뷔기업, 유망기업, 리딩기업)

※ 사업계획서는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첨부파일은 별첨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목차는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기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목차의 통합 또는 추가 세분화가 가능하나, 상기 제시 목차의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별 KPI 작성 기준 >

KPI 인정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수출) 수출신고필증 (관세청),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li> <li>▪ (서비스수출) 수출입 실적확인증명서 (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입 확인증</li> </ul> </li> <li>▪ (신규고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li> </ul>

구분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컨설팅	■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분쟁 대응 등
	■ 진출전략 수립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등
	■ 시장조사	·현지 시장동향, 경쟁사 분석 등(서비스거점 포함) ·KOTRA 서비스산업팀 주관, 해외전시회 참관 ·KOTRA 서비스산업팀 주관, 미스터리쇼퍼 점검
현지화 기반구축	■ 번역/더빙	·외국어 번역/더빙
	■ 홈페이지(앱)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및 앱 제작
	■ 솔루션 사용	·모듈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료
	■ 지재권/특허출원	·각종 지재권/특허 등록비(연차비/PCT 출원금/마드리드 등)
	■ 인허가/인증	·각종 인허가 및 인증비(해외기관 인증·허가)
	■ 법인설립/조사	·법인설립을 위한 조사 및 등록 대행
파트너 발굴	■ 거점/지사화	·KOTRA 서비스거점 또는 지사화사업 신청
	■ 해외로드쇼	·KOTRA 서비스산업팀 주관, 해외 개최 상담회
	■ 맞춤형 비즈니스출장	·KOTRA 서비스산업팀 주관, 비즈니스출장 지원
홍보	■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해외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 홍보활동	·온라인홍보(페이스북/구글검색 등) 및 현지 오프라인 매체 광고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분야 해외전시회 참가비(온·오프라인) 및 전시품 운송비
	■ 사업설명회 참가	·사업설명회 및 IR 참가(해외개최)
기타	■ 해외출장	·항공임 및 숙박비 지원
	■ 기타	·해외마케팅에 수반되는 직접비용(사전문의 필수) ·KOTRA 유료서비스(사전문의 필수)

\* (기타) 해외출장비는 기업분담금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용